

수수료(제49조제1항 관련)

1. 일반기준

구분	금액
가. 법 제13조에 따른 물질승인의 신청	
1)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물질승인의 신청	200,000원
2)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물질승인의 신청	100,000원
나. 법 제15조 본문에 따른 물질승인의 변경승인 신청	50,000원
다.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물질동등성의 인정 신청	50,000원
라. 법 제21조에 따른 제품승인의 신청	
1)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제품승인의 신청	200,000원
2)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제품승인의 신청	100,000원
마. 법 제23조 본문에 따른 제품승인의 변경승인 신청	50,000원
바.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제품승인의 신청	50,000원
사.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제품유사성의 인정 신청	50,000원
아.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 명령 신청	20,000원

2. 감면기준: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제1호에 따른 금액의 50%, 소기업에 대해서는 제1호에 따른 금액의 80%를 감면한다.